

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허가 사항	허가번호	허가 연월일	
대 표 자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번호:)	
상 호	현재 허가받은 상호		
영 업 장 주 소 지	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 (전화번호:)		
변경사유			
변경사항	변경하고자 하는 상호		
	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 (전화번호:)		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.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	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질 차

신청서 작성	→	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의 허가담당부서 접수	→	현재 허가받은 기관으로 부터 허가대장 이첩 (허가기관이 다른 경우)	→	변경신고사항을 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문화유 산매매업 허가증 발급	→	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
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-	---	--------------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특 별 자 치 시 · 특 별 자 치 도 · 시 · 군 · 구